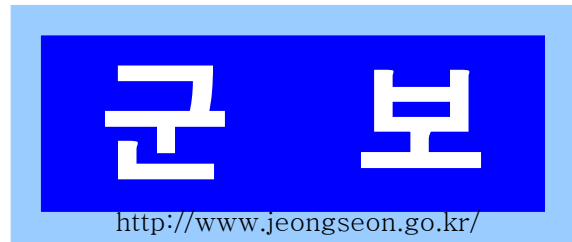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96호 2009. 6. 17. (수)

【조 례】

- 정선군조례 제2165-16호 정선군의회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1
- 정선군조례 제2166-17호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4
- 정선군조례 제2167-18호 정선군 경로당 지원조례.....5
- 정선군조례 제2168-19호 정선군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8
- 정선군조례 제2169호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12

【규 칙】

- 정선군규칙 제1148호 정선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14

【훈 령】

- 정선군훈령 제379호 정선군 공문서 배부번호규정 일부개정규정..... 15
- 정선군훈령 제380호 정선군청직원세질서새생활실천협의회운영규정 폐지규정..... 16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09-384호 「정선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7
- 정선군공고 제2009-395호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 공시송달..... 22
- 정선군공고 제2009-396호 지방세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3
- 정선군공고 제2009-399호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5
- 정선군공고 제2009-400호 무단방치건설기계 강제처리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28
- 정선군공고 제2009-401호 지방세 체납자 공매예고 공시송달공고..... 29
- 정선군공고 제2009-404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 공고(안).....30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3, FAX:560-2592)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9. 6. 16.

정선군조례 제2165-16호

정선군의회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회(이하“군의회”라한다) 발전과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정선군의회정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의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정선군 주요 정책의 결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2.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의 개발
3. 의회 방청을 통한 의정활동사항 평가 및 자문
4. 군민 불편사항 및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5. 기타 군의회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군의회 부의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의회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의회 의원의 추천을 받아 군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1. 이장 9명
2. 각급 사회단체 회원 11명
3. 지역주민 9명

② 위원이 사망이나 질병, 전출, 퇴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주민의사에 반하여 허위 제보하는 자
2.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임기)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사항) ①위원은 엽서, 전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안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이 제보 및 제안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의 의제

3. 그 밖에 회의 소집에 필요한 사항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활동지원) ①의장은 위원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②의장은 위원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회의 및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기진작) 의장은 활동이 우수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창, 국내 비교 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정선군의회 발전과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주 요 골 자

○ 위원회의 기능 (제2조)

- 정선군 주요 정책의 결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의 개발
- 의회 방청을 통한 의정활동사항 평가 및 자문
- 군민 불편사항 및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 기타 군의회가 부의하는 사항

○ 위원회 구성 (제3조)

- 위원회는 군의회 부의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의 위·해촉(제4조)

- 위촉대상: 이장 9인, 각급 사회단체 회원 11명, 지역주민 9인
- 해촉사유: 위원이 사망이나 질병, 전출, 퇴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 활동에 반할 때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9. 6. 16.

정선군조례 제2166-17호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의결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사전에 지적하여 시정 요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의 의결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신설(제5조제2항 단서 신설)
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의결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경로당 지원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9. 6. 16.

정선군조례 제2167-18호

정선군 경로당 지원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정선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경로당 지원) ①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
6. 기타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5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
2. 정선군의회 의원
3.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고령화정책담당이 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타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0조 (의무) ①군수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안 이 유

- 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 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 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으로 규정함(제2조)
-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난방연료비, 환경개선사업비,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3조)
-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반환규정을 정함(제4조)
-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6조~제9조)
- 군수는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도록 규정함(제10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9. 6. 16.

정선군조례 제2168-19호

정선군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이 연로하여 경제능력이 없거나 노환 등으로 식사를 거르거나 거를 우려가 있는 영세한 노인들에게 건강과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인급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의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급식”이란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노인(노인단체 포함)에게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라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장소”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종교시설·사회복지시설 등 급식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4.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급식장소에서 무료 급식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장소 이외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거리에 있는 노인에게 직접 도시락 등을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6. “경로당 현물제공”이란 군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 중 농촌지역 및 도시지역의 영세한 경로당에 쌀 등 식재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7. “운영자”란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군수로부터 노인급식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① 군수는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1월 중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시기) ① 급식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

상위계층 이하의 65세 이상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으로 한다.

2.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 상위계층 이하의 65세 이상자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으로 한다.

3. 경로당 현물제공 지원대상은 농촌지역 및 도시지역의 경로당 중 10퍼센트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영세한 경로당으로 한다.

② 급식지원 시기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은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은 주 7회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계절별·지역별·계층별·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계절별·지역별·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자 모집) ① 군수는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보조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외의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읍·면 자생단체 등의 비영리 단체를 우선·지정할 수 있다.

② 보조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은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경로식당 운영은 1일 30인 이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주1회 이상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운영자의 의무 등) ① 급식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운영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생산자단체와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사회적 소명감을 갖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류비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정선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0조에 따라 정선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고 보험에 가입한 자 중에서 노인급식에 있어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군수는 노인급식 활동을 장려하고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선군 포상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8조(노인급식지원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노인급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주민생활지원실장, 보건소장 등 공무원3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명, 노인단체에서 추천하는자 2명, 그 밖에 군수가 이 분야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하는자 2명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지급방법·지급시기 및 운영자 선정
2. 노인급식의 정책대안 및 개선방안 제시
3. 그 밖에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제출할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군의 고령화 정책담당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등에게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지원된 노인급식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 정 이 유

- 노인들이 연로하여 경제능력이 없거나 노환 등으로 식사를 거르거나 거를 우려가 있는 영세한 노인들에게 건강과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노인급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주 요 내 용

- 급식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제4조)
 -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 및 재가노인식사배달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의 65세 이상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거나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으로 한다.
 - 경로당 현물 제공 지원대상은 농촌지역 및 도시지역의 경로당 중 10%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영세한 경로당으로 한다.
 - 급식 시기는 주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계절별·지역별·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군수는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보조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제5조)
- 군수는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노인급식지원위원회를 둔다. (제8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9. 6. 16.

정선군조례 제2169호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000만원 이하	1,000분의 1
6,0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

제96조 중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를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세율에 대한 적용특례)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 정 이 유

- 고용창출산업 활성화와 세부담 감소를 위하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 9422호(2009. 02. 06)】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변경(기존 3개 과표 표준에서 4개 과세표준으로 분류)을 통한 세율 차등 인하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舊교통세법) 제2조에 의거 군세인 ‘주행세’의 세율을 높이고, 도시계획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군세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군세조례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평과세 구현으로 납세자의 세액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복지 및 지역발전 등 근본취지에 부합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인하(제29조제1항제3호)

기 존		변 경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6,000만원 이하	1,000분의 1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6,0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2.5
1억원 초과	24만원 + 1억원 초과금 액의 1,000분의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천분의 240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360으로 변경(제44조)
-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재산세의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1.4로 변경(제96조)

정선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09. 6. 16.

정선군규칙 제1148호

정선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정선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 지 이 유

-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정선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조례』가 폐지함에 따라 『정선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정선군 공문서 배부번호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정 선 군 수

2009. 6. 1.

정선군훈령 제379호

정선군 공문서 배부번호규정 일부개정규정

정선군 공문서 배부번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행정구역명칭변경에 맞추어 공문서 배부번호 규정을 개정하여 문서를 신속·정확하게 배부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

주 요 내 용

- 동면과 북면의 명칭이 각각 화암면 및 여량면으로 개정됨.

정선군청직원새질서새생활실천협의회 운영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9. 6. 4.

정 선 군 수

정선군훈령 제380호

정선군청직원새질서새생활실천협의회운영규정 폐지규정

정선군청직원새질서새생활실천협의회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공고 제2009-384호

「정선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 6. 4.

정 선 군 수

1. 제정취지

- 읍·면 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경우 「정선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급 근거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점에 따라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재정법」 위반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축제비용은 해당 지역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에 지원하며, 다수의 단체 또는 주민이 참여하여야 함(안 제4조)
- 보조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마” 목의 규정에 의한 물품구매, 공사,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안 제5조)
- 보조금을 보조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검토·조정한 후 정선군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다만, 연례반복적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안 제6조)
-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운영은 정선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함(안 제6조)
- 심의를 거친 지원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 보조금 신청서를 개시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종료 후 30일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및 개선·발전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함(안 제8조)

-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위원회에 대하여 수시로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관계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정선군청
관광문화과 (우편번호 233-804)
- FAX제출 : 033-560-2593
- 문의전화 : 033-560-2370

붙임 : 정선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관내에서 개최하는 지역단위 축제를 지원함으로써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역축제”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문화제, 예술제, 대회, 제(祭) 등 축제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 중 개최시기가 주기적이고, 행사 참여자가 다양성을 띠며, 읍·면별 다수의 주민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역축제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① 축제비용은 해당 지역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에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제위원회는 특정단체 단독으로 구성되어서는 아니 되며, 다수의 단체 또는 주민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보조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물품구매, 공사,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보조금을 보조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지역주민 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이를 검토·조정한 후 정선군지역축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다만, 연례반복적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운영은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한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6조에 규정한 심의를 거친 지원 지역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조신청 및 정산) ① 행사 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개시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자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행사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발전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반납)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월 이내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때
4. 제10조제1항에 의한 지도·감독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정산보고 한 때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위원회에 대하여 수시로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축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는 보조금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군수는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한 공이 큰 모범주민 또는 유공주민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3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라 생략

마.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급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생략

□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정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1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선군공고 제2009-395호

공 시 송 달

1. 성 명 : 이 종 화
2. 주소 또는 거소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7-105
3. 서류의 명칭 :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
4. 서류의 내용

지방세법 제6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만약 귀하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09.12.1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기한내에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명단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소명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의 서류를 2009년 5 월 28 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9. 6. 8.

정 선 군 수

문의처 : 정선군 세무회계과 (033-560-2293)

정선군공고 제2009-396호

공 시 송 달

성 명 : 이종일 등 11명 (내역별첨)

주소또는거소 : 서울시 중랑구 묵동 250-8 (23/4) 등 11개소

서류의 명칭 : 취득세·면허세·주민세·자동차세 독촉고지서

서류의 내용 : 2009년 5월 발송 지방세 독촉고지서 반송분

위의 서류를 2009년 5월중 귀하에게 우편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사무소 등이 불분명하므로 독촉납기를 2009년 7월 6일로 변경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 합니다.

2009. 6. 8.

정 선 군 수

지방세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내역

세 목	현주소	납세자명	과세물건	공고사유
취득세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250-8 (23통4반)	이종일	토지 고한읍 고한리 16-16번지 5,752.0000㎡ 경락공매	수취인미거주
취득세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707-17 (12통6반)	송광득	토지 신동읍 운치리 산 110번지 17,058.0000㎡ 경락공매	이사감
취득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60-26 (5통6반)	이진생	토지 신동읍 운치리 236번지외 8필지 13,567.0000㎡ 매매	이사감
면허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2가 99-3 3층 (36통1반)	이현주	연세전당사대부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29 (1통9반)	김점옥	뉴얼큰이	수취인불명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511 (5통4반)	유병갑	2007년도 종합소득세할주민세	수취인미거주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165 (2반)	강옥복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정마을하 나316-701호	이사감
주민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269-29	도영종합건설	2008년11월귀속(도영종합건설 (주)) : 근로소득	이사감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427-4 (4통7반)	윤대현	77더4634(비영업용, 승차정원:12)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61-34 고한연립주택 305호 (9통2반)	김백훈	51모2584(비영업용, 배기량:2476) [차 령경감율:50%]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삼척시 정하동 41-59 (12통1반)	이준하	강원80노4476(비영업용, 적재정 량:1000)	수취인미거주

정선군공고 제2009-399호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09. 6. 8.

정 선 군 수

1. 제정취지

-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기관·단체의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함(안 제3조)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우편 또는 팩스(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법인·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우편번호 233-804)
 - 전화 : 033-560-2367
 - 팩스(FAX) : 033-560-2174

붙임 :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선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정선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기획감사실장
2. 건설도시과장
3.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한 정선군의회 의원 1인
4. 교통안전 관련 기관의 소속 직원 중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
5.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제3조제3호의 정선군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 내로 한다.

② 제1항 규정이외의 위원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統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정선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공고 제2009-400호

무단방치건설기계 강제처리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

우리군에 무단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강제처리(폐기) 후 등록말소하고자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의 말소]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의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에게 지정된 기간내에 권리행사 및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통보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9. 6. 8.

정 선 군 수

1. 공시송달대상

등록번호 (건설기계명)	소유자성명 (전소유주)	저당권자 성 명	저당권자 주소 (저 당 가 액)	권리행사 기 간	말소예정일
강원06고6936 (덤프트럭)	박근형 (장호원)	이 명 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289-3 (금7,000,000원)	2009.08.31. 까지	2009.09.01. 이후

2. 공고기간 : 2009. 06. 08.이후 14일 이상

3. 송달내용 : 강제처리(폐기) 후 등록말소 예고 및 재산권행사요청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033-560-2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09-4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하였던 재산에 대하여 공매 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6. 8.

정 선 군 수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공매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9. 06. 09 ~ 2009. 06. 22 (14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구분	성명(법인)	주 소	체납세목	체납액	송달불능 사 유
공매 예고	포밍업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5-1 빅토리아빌딩 804호	취득세(부동산) 외 2건	6,439,710	이사감

(2009.06.08현재, 단위 : 원)

4.공시송달내용

-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매진행을 위해 압류하였던 재산에 대하여 공매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 송달합니다.
-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내에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징수(033-560-2292)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선군공고 제2009-404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 공고(안)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및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09. 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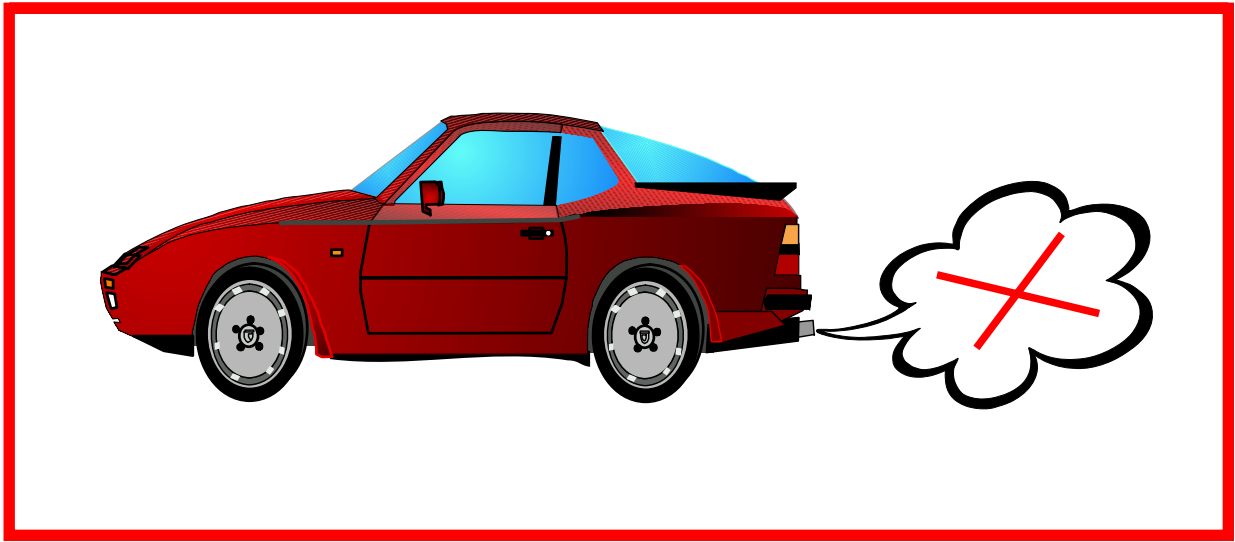
정 선 군 수

- 다 음 -

연번	구 분	대상(장소명)	위 치	비고
1	터미널	정선종합터미널(강원여객)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757	
2	터미널	사북·고한공영버스터미널	정선군 고한읍 고한14리	

《안내문 설치 안》

공 회 전 제 한 지 역
(IDLING RESTRICTED AREA)



※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 및 강원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 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제5호 및 강원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09. 7. 1.

강 원 도 정 선 군 수